
정책참고자료

2017-1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4
-구매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 안전인증번호 확인 필요 -	

2 국민권익위원회

“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전 문화재위원 성명서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입장”	6
해당 성명은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이해부족에 기인	

3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도 상반기 벤처투자 시장 활황 계속	13
- 상반기 벤처투자 1조 원에 육박, 하반기 펀드 결성 급증할 듯 -	

4 교육부

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17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5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의 생활 속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33
-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 개최 -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국민과 함께 문화정책 수립한다	36
- 권역별 ‘문화정책(聽策)포럼’ 개최 및 온라인 국민참여창구 개설 -	

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식품 매출액 및 판매장 수 증가	38
-----------------------	----

8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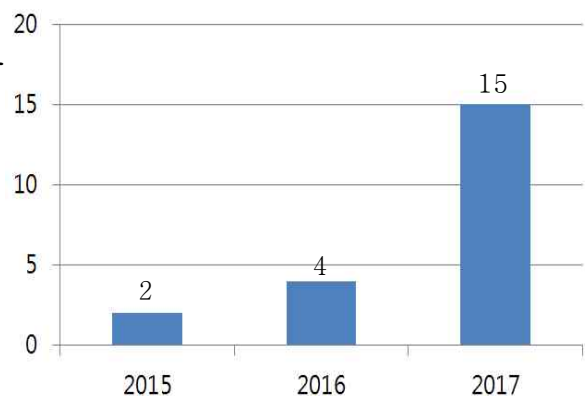
	올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나타나	_____ 44
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기관 추가 공모 -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고급 훈련을 통해 문제해결형 창의·융합 인력 양성	_____ 48
10	여성가족부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_____ 51
11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_____ 53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일자리 5만 4천개 창출한다. - 4일(금) 국정과제인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_____ 56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 구매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 안전인증번호 확인 필요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휴대용 선풍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 온라인 마켓(이베이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휴대용 선풍기의 판매량이 작년 5만 8천여 대에서 올해 16만 4천여 대로 약 3배 증가하였다.
 - 이에 따른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도 작년에 비해 3.75배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사고 유형은 휴대용 선풍기 폭발이나, 선풍기 날에 의한 타박상이다.
 - 지난 5월 10일에는 경기지역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학생 13명이 다치기도 하였다.

휴대용 선풍기 안전사고



출처: 한국소비자원('17년도 사고 : 6월말 기준)

-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주기를 당부하였다.
- 먼저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및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인증번호를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한 후 구매한다.
 - KC 인증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
 - *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배터리에는 과열과 폭발을 방지하는 보호회로가 설계되어 있다.
 - 휴대용 선풍기를 충전할 때에는 제품에 표기된 정격 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 전압이 높은(9V) 고속충전기 사용은 과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 또한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풍기 보호망 간격이 촘촘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 “휴대용 선풍기는 작고 편리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전 문화재위원 성명서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입장”

해당 성명은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이해부족에 기인

- ◆ “전 문화재위원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결정 철회 요구”(8.1. 경향신문)에 보도된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임 위원 19명의 성명서 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입장

-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단체에서 간부를 역임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재위원회가 불공정하고 편향된 결론을 도출했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임
- 문화재향유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거나 단편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활용, 문화향유권 신장 측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첨예한 의견대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임
- 문화재청장의 거부사유 타당 여부를 심리·재결한 것으로 지역의 수익창출 사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바,

- 행정부처의 각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 단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본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 행정심판 재결 개요

【사건개요】

- 2015. 9. 14.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조건부 승인
 - (조건)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마련 등
- 2016. 7. 20. 양양군,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천연기념물 제171호('65. 11. 5. 지정)「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오색케이블카(3.5km, 곤돌라 53대) 설치
- 2016. 12. 30. 문화재청장,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 (동물) 공사 시 소음·진동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 초래
- (식물)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 침입 가능성 증대
- (지질) 지구진화단계 이해에 유용, 상부정류장 부분 암괴원 발달
- (경관) 설치·운영 시 경관에 영향이 크고 자연경관 훼손

- 지역주민·강원도·환경단체 등이 결부되어 복잡한 찬반대립 양상
 ⇒ 제21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을 이유로 인용(6.15)

【재결 주요내용】

- **(절차적 하자 부분)** 절차상 위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나 매우 적절하지 않음
- 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국민행동'의 참가단체에서 이사장 등을 역임
 - 문화재위원회 의결은 거수 또는 기명투표 방식이나, 의결을 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실체적 하자 부분)**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
-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상충함
 -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환경부장관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청구인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저감될 수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측면에만 치중한 채 그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 관련 성명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1. 문화재위원회 의결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관련

- 성명서에서 문화재위원회는 위원간 심층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의결방식은 50년간 이루어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결정 전부를 뒤집는 논리이고,
- 균형 잡힌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소속 의원들의 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투표는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은 스스로 마련한 위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위 운영규정이 실제 문화재위원회 의결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임
 -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는 설악산케이블카 사건 관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의 속기록에 거수나 기명투표로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찬반 위원 및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영규정에 따르지 않은 의결절차의 부적절을 지적한 것임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음
 -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특정 시민단체가 극렬하게 공식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단체의 간부를 역임한 전력이 있는 위원이 해당 사항의 심리에 참여한다면, 당사자로서는 불공정한 심리를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임

2. 문화재 활용에만 치중하여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 성명서에서 통영 미륵산 사례를 들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도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환경문제에서 사전예방원칙을 간과한 것이고, 중행심의 논리라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높은 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본 사건은 단지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을

근거로 인용 재결이 된 것은 아니고,

- 환경 부분에 대해 정부의 9개 부처가 모여 논의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사업이 설악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후관리방안의 수립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한 사정과,
-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나 피청구인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 ~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 및 개선 과제에서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와 문화향유권의 신장**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사정 및,
-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재결이므로,
- 문화재 활용이라는 측면에만 치중하여 문화재 보존의 부분을 간과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재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

○ 한편 행정심판은 각 사건마다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 건을 이유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음

3. 케이블카 설치가 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 성명서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실제로는 경제적 수익을 우선하여 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고, 수많은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근본 의도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문화재청이 거부처분에서 든 거부사유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였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의 거부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앞서 재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최종 결론에 이른 것으로, 지역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라는 정책적인 내용은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4. 중행심의 결정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거부하고 천연기념물의 보전을 막는다는 주장 관련

- 성명서에서 차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안전은 모두 자연과 환경의 비전문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으로 결정해야 할 위험을 안게 되고 이번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며, 행정심판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행정심판의 주요한 목적이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문화재청장의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임, 그 밖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시·도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종 정부 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임
- 다만, 문화재위원회가 내린 전문적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이 경우라도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 행정부처의 각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궁할 수 있을 정도의 논거가 제시되어야 함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은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아 임명된 법률전문가들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본 건 재결이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목적과 권한범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어 전혀 맞지 않음

◆ 결 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가로서의 심의결과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 동 사업이 설악산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 실제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이미 동일쟁점에 관하여 상이한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로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충실한 심리를 하였어야 하며,
-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찬반여론이 부딪치는 상황이므로 어느 일방의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 외에 절차의 공정성도 철저히 기하였어야 함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이러한 점들이 결여되었고, 결국 이에 기초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자기통제를 통해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행정심판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향후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2017년도 상반기 벤처투자 시장 현황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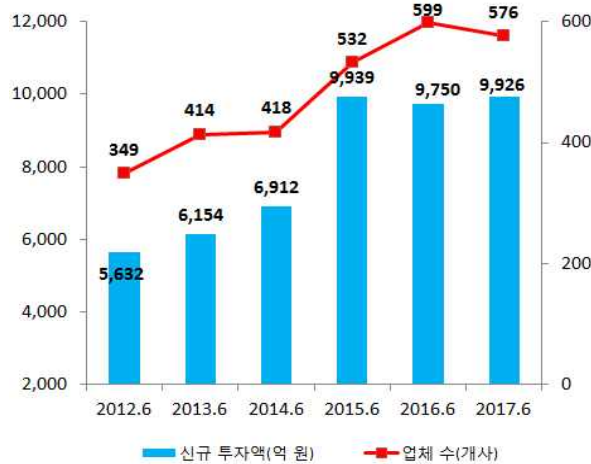
- 상반기 벤처투자 1조 원에 육박, 하반기 펀드 결성 급증할 듯 -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의지에 대한 기대 속에 금년 벤처투자 시장은 작년에 이어 활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

-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2일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는 9,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9,750억 원)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 추이 >



- 2017년도 상반기 벤처투자 현황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업력별 투자 현황 (붙임3)

- (업체 수)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3%p 증가한 77.3%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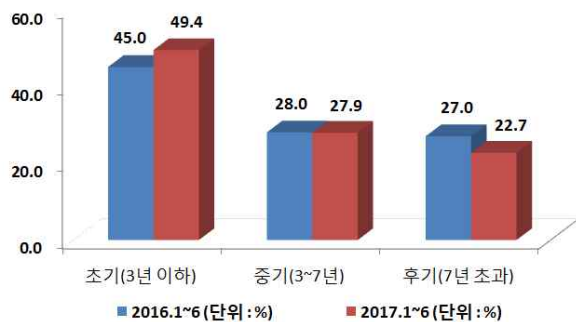
특히, 투자받은 기업의 절반 가까이 (49.4%)가 창업초기기업 (업력 3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13년부터 조성한 창업초기기업 투자펀드 (총 13개, 2,934억 원)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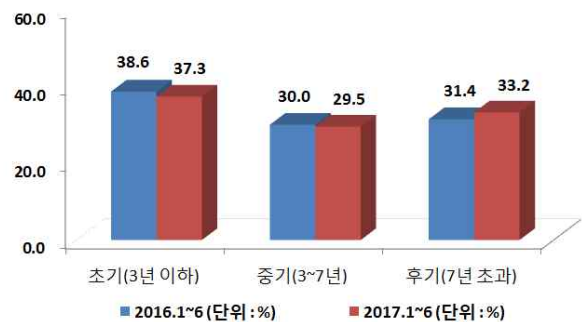
* 모태펀드 출자하여 조성된 펀드로 주목적 투자대상을 창업 3년 이내로 제한한 펀드

- (금액) 창업초기기업 (3년 이내)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각각 3,698억 원 (37.3%)과 2,928억 원 (29.5%)을 기록하여 각각 전년 동기과 유사한 수준 (3,752억 원, 2,926억 원)으로 나타났다.

< 업력별 벤처투자 비율 (업체수 기준) >



< 업력별 벤처투자 비율 (금액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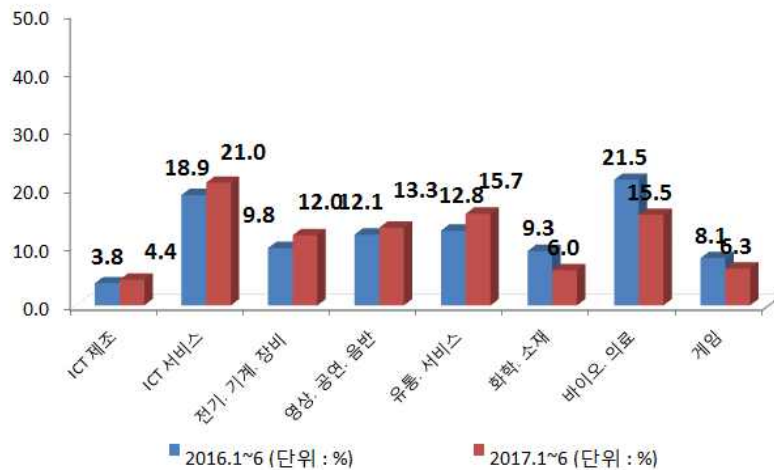


② 업종별 투자 현황 (붙임4)

- ICT제조 (4.4%), ICT서비스 (21%), 전기·기계·장비 (12%)의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0.6%p, 2.1%p, 2.2%p 증가하였고,
- 영상·공연·음반 (13.3%), 유통·서비스 (15.7%)의 비중도 전년 대비 각각 1.2%p, 2.9%p 증가하였다.
- 반면, 화학·소재 (6%), 바이오·의료 (15.5%), 게임 (6.3%)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3.3%p, 6%p, 1.8%p 감소하였다.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력을 토대로 한 ICT 융합 업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진 반면,

- 바이오 분야는 한미약품 사태이후 상장기업들의 성적이 부진하여, 벤처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업종별 벤처투자 비율 >



- 한편,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은 1조 4,163억 원 (56개)으로 전년 동기 (1조 7,530억 원) 대비 19.2%(3,367억 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추경 소식이 전해진 후 펀드 결성을 보류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붙임1)
- 역대 최대 규모인 모태펀드 추경 예산 8,000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약 1.3조 원의 벤처펀드가 추가로 조성되는 등 하반기에는 벤처펀드 조성이 대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상반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 >

구분	'11.6	'12.6	'13.6	'14.6	'15.6	'16.6	'17.6
조합 수 (개)	19	18	10	32	32	57	56
금액 (억 원)	4,192	4,238	2,293	13,758	6,141	17,530	14,163

- * '13년도 하반기에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된 후, 1차년도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14년도 상반기에 성장사다리 하위펀드가 대거 조성됨

< 모태펀드 하반기 출자사업 분야별 개요 >

펀드 구분	모태 출자액	조성 기대액	최대 출자비율
청년창업	3,300억 원	5,500억 원	60%
재기지원	2,500억 원	3,125억 원	80%
4차 산업혁명	2,500억 원	3,572억 원	70%
지방	200억 원	334억 원	60%
지식재산권	200억 원	334억 원	60%
계	8,700억 원	12,865억 원	-

- 출자자 구성을 보면, 벤처펀드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이 출자한 규모도 감소하였으나, 민간 출자자수는 210개에서 253개로 급증 (20.5% ↑)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저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5)

- 한편, 금년 상반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창업투자회사는 스마일 게이트인베스트먼트로 상반기에만 53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가장 큰 펀드를 결성한 회사는 소프트뱅크벤처스로 1,21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6)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추경 출자사업으로 하반기 펀드 결성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펀드가 결성됨에 따라 기존 펀드에서 하반기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투자 실적이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또한, “모태펀드에 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벤처펀드에 민간자금도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칭) 기업투자촉진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상반기에 총 10회의 찾아가는 투자 IR (투자유치 설명회)을 개최한 결과, 3개 기업이 3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34건의 투자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 7월 3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당연직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 ↑)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 중위소득(예시: '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 '18년 국가통계 소득기준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7년 및 '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 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였다.

<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가·인천)		3 (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21.3	(+1.3))	18.7	(+0.9))	15.3	(+0.6))	14.0	(+0.4))
2인	24.5	(+1.4))	21.0	(+1.0))	16.6	(+0.8))	15.2	(+0.5))
3인	29.0	(+1.7))	25.4	(+1.2))	19.8	(+0.9))	18.4	(+0.6))
4인	33.5	(+2.0))	29.7	(+1.4))	23.1	(+1.1))	20.8	(+0.8))
5인	34.6	(+2.1))	30.8	(+1.4))	24.2	(+1.1))	21.8	(+0.8))
6인	40.3	(+2.5))	36.4	(+1.7))	27.6	(+1.4))	25.2	(+1.0))

* 괄호는 2017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하여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5년 주거급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은 변동없이 유지해 왔었다.

< '17년 및 '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17년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18년	378만원(3년)(+28만원)	702만원(5년)(+52만원)	1,026만원(7년)(+76만원)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하였다. 연간지원 금액은 '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되었다.

* 부교재비 최근 3년간 인상율 : '15년 동결, '16년 1.3%, '17년 5.1%

< '17년 및 '18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 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년	'18년	
초등 학생	부교재비	41,200원	66,000원 (60.2% ↑)	연1회 일괄지급
중 · 고등 학생		41,200원	105,000원 (154.9% ↑)	
초등 학생	학용품비	0원	50,000원 (순증)	연2회 분할지급
중 · 고등 학생		54,100원	57,000원 (5.4% ↑)	
고등 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15.6월 40.7만원에서 '16.12월 51만원('17.1월 54.4만원)으로 25.3% 증가하였다.

<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 '15.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6.4월부터 국토교통부·교육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해, '16.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가구는 전국 18,000가구이다.
- 설문조사 자료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물가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서울대학교가 공동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 실태조사에는 주거급여 관련사항은 국토연구원, 교육급여 관련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하여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였다.
-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16년 10~12월(10.23~12.9)에 실시되었고,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설문조사 기준연도는 '15년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본자료가 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으로, '14년 335만명 대비 다소 감소한 309만명('15. 12월)으로 나타났다.
- '15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명,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명으로 나타나 '14년 133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했다.
- 반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은 제도 개편전 최저생계비와 유사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계층으로 '14년(118만명) 대비 25만명 감소한 93만명으로 나타났다.
- * 비수급 빈곤층 감소는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인한 선정기준 및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도입과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추정됨

-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동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차상위 계층 규모 >

2005년 실태조사 (’03년 기준)		⇒	2008년 실태조사 (’06년 기준)		⇒	2011년 실태조사 (’10년 기준)		⇒	2015년 실태조사 (’14년 기준)		⇒	2017년 실태조사 (’15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	177만 명		비수급 빈곤층	103만명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비수급 빈곤층	118만명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최저 생계비 ~ 120%	86만명	⇒	최저 생계비 ~ 120%	67만명	⇒	최저 생계비 ~ 120%	68만명	⇒	중위 40% ~50%	85만명	⇒	중위 40% ~50%	51만명
계 (차상위)	263만명		계 (차상위)	170만명		계 (차상위)	185만명		계 (차상위)	203만명		계 (차상위)	144만명

* ’03년, ’06년, ’10년 최저생계비, ’14년 실태조사의 중위소득, ’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전년 203만명 대비 급감하여 144만명으로 나타났다.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실태

- (빈곤요인)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취약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경제활동 가구주,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모두 높아 가구가 빈곤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 (가구특성) 1인가구 비중은 수급가구(67.4%), 차상위계층(30%이하 64.3%, 30~40% **68.8%**, 40~50% **59.2%**) 모두 전체가구(27.2%) 대비 2배 이상이었고, 단독·한부모·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29%이나 수급가구의 경우 76.5%에 달했다.
- 수급가구의 경우 전체가구(노인가구 29.6%, 장애인가구 6.4%) 대비

노인가구 비율은 2배(60.3%), 장애인가구 비율은 6배(38%) 높았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전체가구(19.7%) 대비 4배 이상(81.8%)으로 나타났다.

□ (소득 및 지출)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가구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액도 중요하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필수 품목의 박탈(결핍) 경험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빈곤층이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의료박탈(결핍) 경험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주거 및 의료지원 개선이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소득 및 재산 비교 >

구분	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 30~40%
총소득*(만원/월)	95.7	50.3	68.1
경상소득*	95.2	49.3	67.7
시장소득 + 타 정부보조금	45.0	46.8	66.9
시장소득	23.7	23.3	46.5
총 재산(만원)	2,578	2,819	2,950
거주 재산	2,266	2,372	2,458

□ (의료) 의료비가 가구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의 경우 25.9%였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45% 내외였으나,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7.4%로 전체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비수급 가구 등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50~75% 사이 가구의 경우 40% 중반, 중위소득 가구부터는 약 10%로 크게 감소하였다.
- (주거) 비수급빈곤층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자가 3,450만원, 전세 4,255만원)은 수급가구(자가 6,446만원, 전세 6,015만원)보다 낮고, 월세 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액, 수급가구 17만원, 중위소득 30~40% 25만원)이다.
 - 차상위계층의 월세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액, 수급가구 17만원, 중위소득 30~40% 25만원).
 - 난방을 못한 경험은 전체가구(2.6%) 대비 수급가구가 6.9배(17.9%), 차상위계층은 5배(13% 내외)로 나타났고, 집세를 못낸 경우는 전체가구가 2% 내외인데 반해 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40% 이하에서는 5~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교육) 고등교육의 경우 여러 이유로 대학진학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경우 8.9%인데 반해, 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가구는 평균 12.6%, 중위 75~100%인 경우는 12.2%에 불과하나, 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0%에 달했다.
 - 교육비 미납경험(대학 포함)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소득 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에 교육결핍이 높게 나타났다.

3) 2017년 최저생계비 추계

-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도 계측, 오늘 의결사항에 포함되었다. 맞춤형 급여에서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고, 실태조사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후 최저생계비 >

개정 전('00-'15.6.30)		개정 후('15.7.1~)	
위상	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위상	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초자료
계측주기	3년마다 계측, 미계측 연도는 물가지수 반영 산출	계측방법	3년마다 계측
심의.의결 공표	계측, 미계측 최저생계비는 중생보 심의.의결 후 공표(고시)	심의.의결 공표	실태조사(최저생계비 포함)는 중생보 심의.의결 후 공표
기 준	중소도시 4인가구	기 준	중소도시 4인가구

-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의 경우 (대도시) 1,897,395원, (중소도시) 1,811,223원, (농어촌) 1,695,829원으로 계측되었다.
- 표준가구를 '13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대도시) 1,842,813원, (중소도시) 1,756,641원, (농어촌) 1,641,247원으로 나타났다.

◇ 전물량방식 계측원칙 (1차 총괄.생계소위 논의 반영)

- (원칙) 전물량 방식의 경우 최대한 기존 계측방식을 유지하고, 비용 상승·하락 항목 및 반영이 필수적인 항목은 변경요인 반영 계측
- (표준가구)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최빈값을 반영하여 4인가구로 유지하고 구성원의 연령을 상향 조정.계측, '13년 계측값과 비교를 위해 연령 미조정 값도 계측

표준가구	2013년	2017년
4인가구	부: 42세 모: 39세 1자: 12세(남/초6) 2자: 10세(여/초4)	부: 44세 모: 41세 1자: 14세(남/중2) 2자: 11세(여/초5)
근거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원자료

- (항목변동) 표준가구 변동에 따른 항목 및 칼로리 변동 등을 적용하고, 그 외 '13년 중생보 의결시 연구진(안)에서 제외된 휴대폰, 청소기 등 품목 및 요금 반영
- (가격변동)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주거비 변동, 에너지 관련 물가 하락에 따른 광열비용 변동 등 주요 가격변동 반영

- '1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는 총 물가지수 반영시 1,683,627원, 항목별 물가지수 반영시 1,731,684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 (4인가구) >

'17년 기준 중위소득		'17년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비고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1,786,952원			
	⇔	4인가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 표준가구 연령변동시 1,811,223원 표준가구 연령유지시 1,756,641원	24,271원 (1.36%↑) ▽ 30,311원 (1.70%↓)
		'17년 물가상승률 적용 최저생계비	
	⇔	'13년 4인가구 중소도시 최저생계비에 총물가지수 적용시 1,683,627원 항목별물가지수 적용시 1,731,684원	▽ 103,325원 (5.78%↓) ▽ 55,268원 (3.09%↓)

-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15년 맞춤형 급여로 제도 개편 시 최저생계비와 동일 수준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선정기준)와 비교할 때 표준가구 연령변동을 반영한 값만 다소 높게(1.36%) 나타나 기준 중위소득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 반장)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급여별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은 8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며,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실태조사, 기준중위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경과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협의 총 13회 실시(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워크숍 2회('17. 2.16, 7.14),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5회('17.3.22, 4.21, 6.7, 6.15, 6.22), 주거급여 소위원회 5회('17. 4.27, 5.23, 6.14, 7.11, 7.26), 교육급여 소위원회 1회 실시('17.6.20))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 붙임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끝.

Q1.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결정방식

- (중위소득)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 (기본원칙)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관성 있게 결정
 - 다만, 통계 표본 교체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일부 보정
- (결정방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통계자료

-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증가율

-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 장기 증가율 →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 최근 경향 반영

Q2. 최저 보장수준

-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Q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심의·의결 사항)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 **총 66개 사업(2017년 기준)**

- (소관부처) 고용부 4개, 교육부 5개, 보건처 3개, 문체부 1개, 복지부 35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국토부 1개

* 자료 출처 : 사회보장조정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17.3월, 총 314개 사업), 행복e음, 2017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기준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3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대부	
4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5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
6	급식비	
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8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9	(기초생활) 교육급여	국가보훈처
10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1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2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3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15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16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17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8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9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20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2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2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4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2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6	양곡할인	
27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28	한센인 피해자 지원	
29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30	(기초생활) 생계급여	
31	(기초생활) 의료급여	
32	(타 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33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34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35	장애(아동)수당	
36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37	장애인 연금(차상위)	
3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0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4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2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43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44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4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4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7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8	치매 검진비 지원	
49	지역아동센터 지원	
50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51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52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53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5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55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56	미혼모·부 초기지원	
57	아이 돌봄 서비스	
5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59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6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1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65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환경부
66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부

국민의 생활 속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 개최 -

- 얼마 전 일명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태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햄버거 포비아가 확산됐고 관련업계는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최근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독감은 올해에도 발병하여 달걀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
-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일(목) 오후 3시 서울시청에 위치한 시민청 태평홀에서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해 왔으나, 근래에 들어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에 기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국민의 생활 속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식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토록 하는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이 마련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산·학·연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하여,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이화여대 안과학 김윤택 교수가 경험담을 토대로 “사례로 보는

국민생활연구”를 소개하고, ▲과기정통부 강영일 국민생활연구팀장이 이번 공청회의 주제인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 주제 발표 후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을 좌장으로,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 배귀남 단장,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현석 단장,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김은영 팀장, 서울신문 유용하 차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정부는 향후 국민생활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로 국민생활문제해결,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배태민 거대공공정책연구관은 “그동안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거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주력해 온 과학기술의 지평을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확장해 가겠다.”며, “국민생활 속 문제해결에 핵심가치를 두고 연구개발(R&D)체계를 혁신해 가고, 전문가의 영역로만 여겨졌던 과학기술연구에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더 담아내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8월 중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 개요

붙임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 개요

□ 개최 개요

- (일시) '17. 8. 3.(목) 15:00~17:10
- (장소) 시민청 태평홀(서울시청 지하2층)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참석 대상) 일반국민, 시민사회 단체, 산·학·연 전문가

□ 행사 식순

시 간	주요내용
15:00~15:05 (05')	■ 인사말씀 - 배태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5:05~15:20 (15')	■ 발표 I 『사례로 보는 국민생활연구』 - 김윤택 (이화여대 안과학 교수)
15:20~15:40 (20')	■ 발표 II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 강영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장)
15:40~16:40 (60')	■ 패널토론 [좌장] -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토론] - 배귀남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최현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생산시스템전략기획단장) - 김은영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팀장)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 유용하 (서울신문 차장)
16:40~17:10 (30')	■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문체부, 국민과 함께 문화정책 수립한다

- 권역별 '문화청책(聽策)포럼' 개최 및 온라인 국민참여창구 개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된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청책(聽策) 포럼'에 참석해 현장 문화예술인, 일반 국민 등의 문화정책 제안을 경청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연령대의 현장 문화활동가, 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의 경직된 형태의 토론회가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원탁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권역별 '문화청책포럼' 진행

도종환 장관은 “문화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며, 문화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문화청책 포럼’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역별 포럼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되며, 논의주제 선정부터 참여자 모집, 포럼 운영까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포럼에서 수립된 문화정책 제안사항은 연말 ‘결과포럼’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문화정책 제안’ 온라인 창구 8월 3일부터 3달간 운영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온라인에서도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체부 전 영역에 대한 문화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표 누리집*에 ‘국민 참여 문화정책 제안’ 창구를 개설한다.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제안에 참여하려면 문체부 대표 누리집 시작화면의 ‘국민 참여 문화정책 제안’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창구는 8월 3일(목)부터 3달간 운영되며 제안된 정책 제안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향후 문화정책 수립 시 활용될 예정이다.

* 문체부 대표 누리집: 컴퓨터(www.mcst.go.kr), 모바일(m.mcst.go.kr/m)

도종환 장관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등 문체부 전 영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식품 매출액 및 판매장 수 증가

- 2016년도 친환경농식품 매출액은 1조 4,723억원 전년 대비 8.9% 증가
- 2016년도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수는 5,446개소 전년 대비 1.5% 증가

* 2016년도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현황 조사 발표

《 주 요 내 용 》

- ◆ 농식품부는 전문판매점, 생협, 대형할인점 등 36개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시행한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2016년도 친환경농식품 매장수와 매출액은 5,446개소와 1조 4,72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5%와 8.9% 증가
 - 친환경농식품 매출액 증가율(8.9%)은 전체 음식료품 소매판매액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포당 평균매출액도 증가('15: 6억원 → '16: 6.5)
 - 매출액 상위품목은 사과, 쌈채소, 딸기, 두부, 과자, 음료, 홍삼제품의 순
 - 친환경농식품 유통기업(단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 안정적 원물조달과 구색 갖추기가 어렵고, 친환경농식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생산자-소비자간 기대치의 차이'는 판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 친환경농식품의 유통·소비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을 육성하여 다품목의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 의무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가치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이하 '전문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대형할인점,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36개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시행한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현황 조사('16년말 기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항목은 매장수 및 매출액*(부류별 유통경로 비중 포함), 매출액 상위품목,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운영 애로사항(건의사항)등이다.

* 가공식품 매출액을 원료의 인증품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유기가공식품 인증품 매출액만 별도로 조사하는 등 조사방법도 개선

□ 우선, 2016년도 친환경농식품 매장수와 매출액은 5,446개소와 1조 4,72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와 8.9% 증가하였다.

○ 친환경농식품 매출액 증가율(8.9%)은 전체 음식료품 소매판매액* 증가율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음식료품 소매 판매액(통계청) : ('15) 83조 2,229억원 → ('16) 88조 968억원

○ 점포당 평균 매출액(비인증품 매출액 포함)의 경우 '15년 6억원에서 '16년 6.5억원으로 상승하였고,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시장반응*도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 인증제 인지도 : ('15) 95.8% → ('16) 97.1 * 친환경 인증제 만족도 : ('15) 64.3점 → ('16) 67.6

○ 매장수와 매출액 증가는 전문점(초록마을, 올가홀푸드 등)과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생협(아이쿱 등)이 주도했으며,

- 매장수는 전문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일부 생협의 다점포화 전략(소비자 접점기회 확대)과 함께 정부의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정책의 영향을 받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로컬푸드 직매장(개소수/매출액) : ('12) 3개소/62억원 → ('13) 71/317 → ('14)103/950 → ('15) 103/1,659 → ('16) 148/2,607

- 또한, 매출액 증가는 독립점포 형태의 생협, 전문점 등이 축산, 수산, 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종합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친환경농식품 매장수 및 매출액(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업 태	매장수		매출액		점포당 매출액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전문점	생협 ¹⁾	624	566	6,271	6,388(3,875)	18.0	18.9
	친환경전문점 ¹⁾	724	810	1,778	2,018(1,863)	5.1	5.5
대형 유통사	대형마트	410	405	2,061	2,287(2,287)	5.3	5.6
	백화점 ²⁾	99	73	1,430	1,430(768)	12.2	10.5
	SSM	1,249	1,286	1,442	2,079(2,079)	1.4	1.6
농협 등	농협	2,157	2,158	371	268(268)		
	로컬푸드직매장	103	148	166	253(253)		
합 계		5,366	5,446	13,519	14,723(11,393)		

주1) 2016년부터 '우리생협'을 생협에서 친환경전문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데이터 추이에 변화 발생

주2) 2016년부터 식품매장을 보유한 백화점만 포함하였으며,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중인 백화점의 식품매장인 '김스클럽'은 SSM으로 집계.

주3) '()'는 인증품(유기·무농약·무항생제·유기가공식품)만의 매출액

□ 소비자가 친환경농식품 판매장별 많이 찾는 상품부류(판매장별·품목별 매출액 비율)를 살펴보면,

- 양곡은 생협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비율이 각각 33.8%와 30.0%로 나타나 가장 높고, 생협은 채소의 비중이 34.4%로 높았다.
- 과일은 대형마트가 29.6%로 가장 높고, 축산물은 생협이 47.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33.9%, 친환경전문점 28.2%, 생협 20.1%로 조사되었으며, 생협은 전체 매출액 대비 유기가공식품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류별 유통경로 비중(단위 : %)>

구 분	생협	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SSM	로컬푸드 등	합 계
양 곡	33.8	11.7	30.0	2.8	17.1	4.6	100.0
채 소	34.4	13.4	19.0	6.9	18.3	8.0	100.0
과 일	21.0	16.6	29.6	10.4	14.6	7.8	100.0
축 산	47.4	15.0	6.1	7.9	21.5	2.1	100.0
수 산	11.3	22.7	9.4	56.6	-	-	100.0
가공식품	20.1	28.2	33.9	1.1	16.7	-	100.0
합 계	34.0	16.4	20.1	6.7	18.2	4.6	100.0

□ 판매장별 매출액 상위품목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으로 분류하면,

○ 신선식품(양곡, 정육 제외)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사과와 쌈채소, 딸기, 토마토 순으로 나타났으며,

- 사과는 생협, 백화점, 전문점에서 많이 판매되고, 쌈채소는 대형마트에서 독보적인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가공식품(베이커리 제외)은 두부, 과자, 음료, 홍삼제품, 우유에서 높은 매출액을 보였으며,

- 두부는 생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과자는 전문점과 백화점에서 높은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홍삼제품은 생협과 전문점에서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 아울러,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사항도 조사하였다.

○ 관계자들은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 원물조달과 구색(품목 다양성) 확보가 곤란하고, 친환경농식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생산자-소비자간 기대치에 차이가 있어 '판매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홍보를 정부차원에서 강화하도록 하고, 생산·판매지원을 통해 인증품의 생산 확대 및 규모화를 요구하였다.

□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그동안 친환경농업은 부실 인증 사태 등을 겪으며 2012년 이후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감소하여 좀처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 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가·기업의 자구 노력,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관리 강화 등의 노력으로 판매장 수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그리고, 기업·단체의 친환경농식품의 유통·소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하여 다품목의 원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 의무자조금 등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가치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선식품 중 매출액 상위 품목

순 위	전체	생협	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SSM	농협
1	사과	사과	딸기	쌈채소	사과	쌈채소	토마토
2	쌈채소	딸기	바나나	토마토	딸기	딸기	사과
3	딸기	감귤	사과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배
4	토마토	복숭아	토마토	바나나	감귤	버섯	쌈채소
5	바나나	바나나	양파	계란	바나나	양배추	모듬순
6	감귤	배	쌈채소	과채류	배	과	고추
7	복숭아	포도	견과류	양념류	계란	토마토	깻잎
8	배	참외	감자	구근류	포도	브로컬리	대파
9	계란	양파	계란	사과	쌈채소	포도	양배추
10	포도	토마토	양배추	키위	복숭아	오이	-

□ 가공식품 중 매출액 상위 품목

순위	전체	생협	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1	두부	두부	과자	유가공품	우유
2	과자	홍삼제품	우유	요구르트	과자
3	음료	음료	홍삼제품	유아식품	음료
4	홍삼제품	만두	딸기잼	음료	유지류
5	우유	과자	설탕	즉석식품	라면
6	만두	분말제품	두부	소스류	주류
7	유지류	추출농축액	참기름	캔디류	초콜릿
8	분말제품	유지류	국탕	-	요구르트
9	추출농축액	라면	야채수	-	차류
10	라면	과즙	쌀떡국	-	햇반

올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나타나

- ◇ 충남지역 실측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짐($26 \rightarrow 22 \mu\text{g}/\text{m}^3$)
- ◇ 대기 모델링 결과, 충남 전역에서 1.1% 낮아지고, 최대영향지점에서는 월평균 3.3%(일최대 8.6%, 시간최대 14.1%) 낮아져

- 환경부(장관 김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 우선,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가동 중단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6월 평균치와 2016년 6월 평균치 비해 15.4%인 $4 \mu\text{g}/\text{m}^3$ 이 감소($26 \rightarrow 22 \mu\text{g}/\text{m}^3$)했다.
- 한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저감효과는 실측한 결과보다는 낮은 1.1%인 $0.3 \mu\text{g}/\text{m}^3$ 으로 나타났다.
 - 다만, 최대영향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mu\text{g}/\text{m}^3$ 감소 등으로 개선되었다.

< 배출량 저감 >

- 배출량 저감은 가동중지된 충남 화력발전(보령·서천, 4기)의 국가 배출량 자료와 실시간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2차 생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전구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중단으로 141톤의 미세먼지 저감, 전국 8기의 가동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 이는 '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17년 6월 예상배출량 대비 22% 수준)

< 가동중지에 따른 배출량 저감 >

(단위 : 톤/월)

구 분	총먼지(TSP)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PM _{2.5})
전 국	31	684	1,697	304
충 남	14	361	644	141

* 배출된 성분 중 총먼지(TSP) 66%, 황산화물 24%, 질소산화물 7%가 미세먼지(PM_{2.5})로 전환(2차생성)

< 농도 측정결과 >

□ 충남지역 대기 중의 농도측정은 반경 70km 내에 측정망, 측정차량,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40개 지점*에서 진행되었다.

* ① 국가·지자체 측정망 11개소, ② 발전소 측정망 9개소, ③ 측정차량 5개소
④ 간이측정기 15개소

□ 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2015년 6월, 2016년 6월 평균 대비 $4\mu\text{g}/\text{m}^3$ (26 → $22\mu\text{g}/\text{m}^3$)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6월의 경우, 강수일수와 평균풍속 등의 기상요인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풍향 등의 기상요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은 예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모델링 결과 >

□ 지난 3년간*(2013년, 2014년, 2016년)의 6월 기상조건을 반영, 노후

화력발전소의 정상가동시와 미가동시 배출량 차이와 대기질을 모델링(BFM기법** 적용)했다.

* 2015년은 기상 관측자료와 모델링 결과에 차이가 많아 제외

** Brute Force Method :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시 배출량을 입력한 결과와 미가동시 배출량을 입력한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법

□ 모델링 결과, 노후발전소 가동중단 기간에 충남지역 미세먼지는 $0.3\mu\text{g}/\text{m}^3$ (1.1% ↓), 최대영향지점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월평균 오염도 $0.8\mu\text{g}/\text{m}^3$ (3.3% ↓), 일 최대 $3.4\mu\text{g}/\text{m}^3$ (8.6% ↓), 시간 최대 $9.5\mu\text{g}/\text{m}^3$ (14.1% ↓)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개선효과는 미세먼지 1차 배출 감소(4%)보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의한 2차 생성 미세먼지 감소(96%)에 주로 기인했다.

< 가동중지에 따른 모델링 결과('17.6) >

(단위 : $\mu\text{g}/\text{m}^3$)

구 분		중단전	중단후	감소량
충 남	월 평균	26.3	26.0	0.3 (1.1%)
	월 평균	24.5	23.7	0.8 (3.3%)
	일 최대	39.6	36.2	3.4 (8.6%)
	시간 최대	67.5	58.0	9.5 (14.1%)

□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대기 모델링을 종합한 결과,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는 월평균 $4\mu\text{g}/\text{m}^3$ 감소했는데, 이 중 노후발전소 가동중지 효과는 $0.3\mu\text{g}/\text{m}^3$ 이며, 나머지 $3.7\mu\text{g}/\text{m}^3$ 은 다른 오염원의 영향 감소, 국지적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분석결과 의미 >

□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인체 위해성 관점에서 중요한 단기간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일 최대 $3.4\mu\text{g}/\text{m}^3$ ↓, 시간 최대 $9.5\mu\text{g}/\text{m}^3$ ↓)되었다.

○ 참고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미세먼지(PM_{2.5})가 평상 시 대비 $10\mu\text{g}/\text{m}^3$ 높아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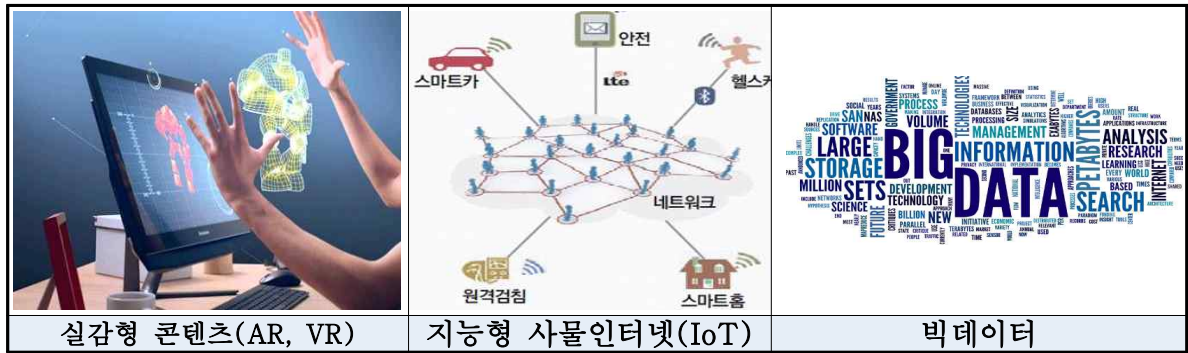
사망률은 전연령 0.8%, 65세 이상 등 취약군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앞으로의 석탄화력발전소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은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데 특히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기관 추가 공모

-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고급 훈련을 통해 문제해결형 창의융합 인력 양성

- 고용노동부는 7월31일부터 8월14일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선도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월부터 서울대,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1개 기관에서 24개 과정을 통해 626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이번 추가공모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 의한 것으로 대학, 연구소, 훈련기관 등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4차 산업혁명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고품질 훈련으로 이끌 계획이다.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비는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 분야에서 고급 훈련과정을 제시하면 일반 훈련비 단가의 400% 내에서 지원되며
 - 신산업분야 훈련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신규장비의 경우 훈련비 단가 400% 초과시에도 지원된다.
- 훈련 분야는 ①스마트제조(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포함), ②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③빅 데이터(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인공지능 등 포함), ④정보보안, ⑤바이오(Bio-Chemical Innovations) ⑥핀테크(Finance & Technology), ⑦무인이동체(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 ⑧실감형 콘텐츠(AR·VR) 등 총 8개 분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최근 급부상하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훈련수준은 NCS 5레벨 이상의 고급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신산업 분야로 NCS 미개발 분야의 경우 훈련 수준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 그밖에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훈련생이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추 수 있게 하고

* 세계경제포럼(WEF) 4차 산업혁명시대 Top 10 Skills중 가장 중요한 skill

- ▲훈련생 요구 및 수준별 지원 등을 통한 철저한 훈련품질 관리
- ▲신산업 분야 기업과의 채용지원 협약(MOU) 체결 등 필요 요건을 갖추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특징>

훈련분야	훈련수준	훈련내용
① 스마트 제조 (Smart factory, Robot 등) ② 사물인터넷 (IoT) ③ 빅 데이터 (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AI등 포함) ④ 정보보안 ⑤ 바이오 (Bio-Chemical Innovations) ⑥ 핀테크 (Finance & Technology) ⑦ 무인이동체 (Unmanned aerial Vehicle) ⑧ 실감형콘텐츠(AR·VR)	○ NCS 5레벨이상의 훈련 포함 - NCS 미개발 분야는 유사 분야의 훈련과정과 비교하여 훈련 수준이 높다는 점을 입증	○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으로 편성 ○ 신산업 분야 기업과 협약 체결, 훈련과정에 기업의 니즈 반영 ○ 훈련 품질관리 철저

- 훈련기관·과정은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훈련생은 각 훈련 기관의 과정 특성에 맞춰 선발되며 훈련생 모집은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 약 15개 훈련과정 개설을 통해 400명 정도의 정예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훈련수료자가 협약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융합형 인력양성이 중요하다”며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9월초 훈련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정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확대 가능성 높은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의 확산 위해 마련
- 한국폴리텍대학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매년 훈련과정 신규 개발, 과정 종료 후 우수과정은 매뉴얼화하여 공개
 - *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데이터융합SW과정” 등 3개의 소수정예 맞춤형 고급·융합훈련과정을 운영, 수료생이 현대아산병원,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등 취업률 92% 달성
- 민간의 역량있는 기관을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집중 지원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오늘부터 정부지원시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7월 26일(수)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현황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88.6	2,184.5	2,680.4	3,176.3	3,672.1	4,168.0

- 이는 7월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천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하여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 지난 6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배기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 으로 전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 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익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 의무
 -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 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
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중
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면제하고 있음

-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
배분 기준을 정비할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하여 특별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전화: 044-201-3735, 팩스: 044-201-5569)

구 분	계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소계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소계	수용 사용	환지	혼용
계	418	189	117	56	16	229	84	144	1
서울	10	9	8	1	-	1	-	1	-
부산	10	10	10	-	-	-	-	-	-
인천	29	7	5	2	-	22	12	10	-
대구	13	1	1	-	-	12	1	11	-
대전	14	5	2	2	1	9	5	4	-
광주	11	9	8	1	-	2	2	-	-
울산	9	2	2	-	-	7	-	7	-
세종	1	1	1	-	-	-	-	-	-
강원	17	8	7	1	-	9	8	1	-
경기	119	50	27	17	6	69	22	47	-
충북	12	3	3	-	-	9	3	6	-
충남	52	23	11	11	1	29	9	20	-
전북	9	8	3	2	3	1	-	1	-
전남	18	11	5	2	4	7	6	1	-
경북	40	16	9	7	-	24	6	18	-
경남	47	17	13	4	-	30	10	19	1
제주	7	7	2	4	1	-	-	-	-

해수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일자리 5만 4천개 창출한다.

- 4일(금) 국정과제인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4일(금) 오송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 노후화·유흡화된 항만의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포함

이번 대책회의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사업시행자, 관할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각 항만별로 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추진일정 점검과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과제상 항만재개발사업에서는 부산항(북항), 인천항, 광양항 등 3개 항만에 대해 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6년간 3조 7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5만 4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 연차별 민간투자 금액 x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유발계수(14.6명/10억원)

사 업 명		투자금액(억원)	일자리 창출(명)
계(3개 항만 5개소)		37,222	54,342
부산항	북항 재개발 (자성대부두 포함)	19,663	28,706
	내항 1·8부두 재개발	350	511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12,528	18,291
	모도 재개발	1,081	1,578
광양항	제3투기장	3,600	5,256

부산항(북항)에서는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투자 유치 중에 있으며, 호텔과 오페라하우스, 환승센터 등 상부 건축물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문현·동삼·센텀시티 등 부산지역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부산 북항을 국제적 위상을 갖춘 신(新)해양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이다. 또한, 현재 북항 내에서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북항지역 통합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각 사업을 연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천항에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2020년 착공 예정)을 통해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가·관광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영종도 매립지에는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종합 해양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도 사업은 오는 9월 경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광양항에서는 묘도 항만매립지를 복합에너지 물류시설·발전시설,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재개발사업을 추진(17.6 착공)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제3준설토 투기장(318만 m^3)을 2025년까지 고부가가치 항만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외에도 작년에 수립한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13개 항만(19개 대상지)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재개발사업들도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우리 항만의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대상지별 재개발 추진현황

항 만 명	위 치	면 적 (천㎡)	추정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비 고
인천항	영종도 투기장	3,316	4,367	• 사업제안('12.9), 제3차공모('13.7~11), 협약체결('14.7), 사업계획 고시('14.12), 사업계획 변경('16.4), 실시계획 승인신청('16.12)	추진중 (‘16.12 실시계획 협의중)
	중구 인천내항 1,8부두	286	401	• 사업계획 고시('15.3), 사업자 공모('15.4), 재공모('16.5), 공공개발 MOU체결(12.12)	추진중 (활성화방안 용역 추진)
대전항	보령시 신흑동 일원	331	3,413	• 타당성 조사('12.9)	기본계획 수립
군산항	군산시 장미동 일원	421	1,088	• 타당성 조사('08.10), 노후호안 정비('14~'16)	"
목포항	목포시 해안동 일원	88	144	• 타당성 조사('10.03), 노후호안 정비('14~'15)	"
	남항 투기장	377	1,326	• 타당성 재조사('13.12), 사업제안서 제출('17.5)	추진중 (사업제안서 제출)
제주항	제주시 건입동 내항	135	667	• 타당성 조사('09.12)	기본계획 수립
서귀포항	서귀포시 서귀동 일원	40	305	• 타당성 조사('11.06), 사업제안('16.12)	타당성 검토중
광양항	묘도 투기장	3,239	5,857	• 정부공모('13.11.6~'14.5.30), 협약체결('15.2), 사업계획 고시('16.2), 실시계획 승인('16.12)	추진중 (‘17.6 공사착공)
	3단계 준설토 투기장	4,331	5,327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신규) 투자의향서 제출('17.1)	추진중 (사업제안서 작성중)
여수항	여수 신항	1,176	5,669	• 여수엑스포박람회 사업으로 완료	사업완료
고현항	거제시 고현동 일원	833	6,965	• 사업제안('13.6.14), 협약체결('14.3), 사업계획 고시('14.8), 공사착수('15.9)	추진중 (공사중)
부산항	중·동구 북항 일원	1,532	17,718	• 사업시행 중(정부/BPA)	추진중 (공사중)
	북항 자성대부두	1,588	14,907	• 마스터플랜 수립('15.12)	기본계획 수립 중
	북항 옹호부두	38	96	• 활성화 방안 용역 시행중('16)	기본계획 수립
구룡포항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9	128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신규)	"
포항항	포항시 송도동 일원	173	648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07.10)	"
동해· 묵호항	동해시 발한동 일원 묵호지구 1단계	35	126	• 타당성 조사('09.03), 협약체결('15.6), 사업계획 고시('15.10), 실시계획 승인('16.5), 착공('16.6)	추진중 (공사중)
	묵호지구2,3단계	1,010	881	• 타당성 조사('09.03)	기본계획 수립
계	13개항(19개 대상지)	18,998	70,033		자성대부두포함

* 사업비는 상부 건축비를 제외한 기반시설 비용임